

#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(도시개발)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도시개발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체비지 매각관련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지급, 등기수수료 지급 등 ○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		
사업비 (당해년도)	65,000천원	[국비]	[사비]65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도시재생실	도시활성화과	윤호중 2133-4630	김준성 2133-4653	홍해수 2133-4654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 2 예산 설명

#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150,000	(x-) 65,000	(x-) △85,000	(x-) △56
사무관리비	(x-) 55,000	(x-) 55,000	(x-) 0	(x-) 0
포상금	(x-) 15,000	(x-) 10,000	(x-) △5,000	(x-) △33
시설비	(x-) 80,000	(x-) 0	(x-) △80,000	(x-) △10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체비지 현황측량, 감정평가수수료 53,000,000원	= 53,000천원
	○ 등기축탁(압류말소)수수료 2,000,000원	= 2,000천원
포상금	○ 시 청산금 체납징수 포상금 3,000,000원	= 3,000천원
	○ 체비지 체납징수 포상금(자치구) 7,000,000원	= 7,000천원

**3**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체비지 매각, 대부, 변상금 수입 증대 등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여 서울시 전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함.

사업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. 같은법 시행령,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
-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9.1.1~12.31
- 대상필지 : 863필지, 349,766㎡
- 사업수행주체 : 서울시 및 자치구
- 추진방법 : 체비지 매각, 대부, 변상금 부과 처리 및 체납징수
- 사업의 주요내용 : 매각관련 측량 및 감정평가,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등 체비지 관리

추진경위

- 토지구획정리사업(1937~1991)으로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관리

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65,000	

체비지관리 등	2020.01~2020.12	55,000	체비지 매각관련 측량비, 감정평가수수료 지급
포상금 지급	2020.09~2020.10	10,000	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, 대부, 변상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

## 4 사업 효과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감정평가, 측량비 지급, 등기축탁,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
2018년도	○ 감정평가, 측량비 지급, 등기축탁,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
2019년도	○ 감정평가, 측량비 지급, 등기축탁,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

### □ 향후 기대효과

- 체비지 매각, 대부, 변상금 수입 증대 등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여 서울시 전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재원으로 사용

## 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-) 200,471	(x-) 0	(x-) 0	(x-) 200,471	(x-) 141,856	(x-) 0	(x-) 58,615
2017	(x-) 100,000	(x-) 0	(x-) -50,000	(x-) 50,000	(x-) 43,287	(x-) 0	(x-) 6,713
2018	(x-) 70,000	(x-) 0	(x-) 0	(x-) 70,000	(x-) 47,819	(x-) 0	(x-) 22,181